

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은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102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박태순, 김진숙, 송바우나,
박은정, 이지화, 김유숙,
이진분, 유재수, 설호영,
한갑수, 박은정 의원(11인)

1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의 ‘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’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고,
-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고,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경쟁을 제한하는 문구 삭제 (안 제4조제1항)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위한 권장 근거 신설 (안 제9조의2)

3.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1

4. 현행조례 : 붙임 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7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5

【붙임 1】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

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, 각종”을 “각종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공동참여 권장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박은정 의원 대표발의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① <u>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,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① - ----- <u>각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의2(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공동참여 권장)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.</u></p>